

2024년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GUIDE



100세시대 행복한 노후,
삼성생명 퇴직연금으로 설계하세요!

I 노후준비 시작하기 03

- 1.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세우기
- 2.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 3. 든든한 현금흐름 만들기
- 4. 노후준비 상태 점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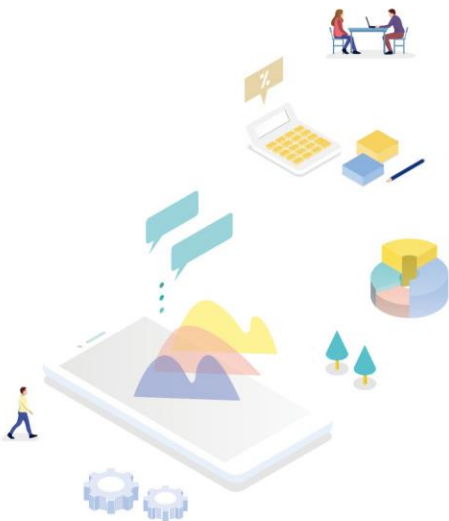
II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04

- 1. 제도의 종류 및 특징
- 2. 퇴직급여 지급 및 IRP 이전 효과
- 3. 퇴직연금과 세금
- 4.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 5. 퇴직연금 계약이전
- 6. 제도의 폐지 및 중단

III 투자전략 세우기 [DC/IRP 가입자용] 09

- 1. 안정적인 투자원칙
- 2. 적립금 운용을 위한 투자상품
- 3. 투자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 4. 적립금 운용현황 확인방법
- 5. 디폴트옵션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부록] DB제도 추가교육 [DB 가입자용]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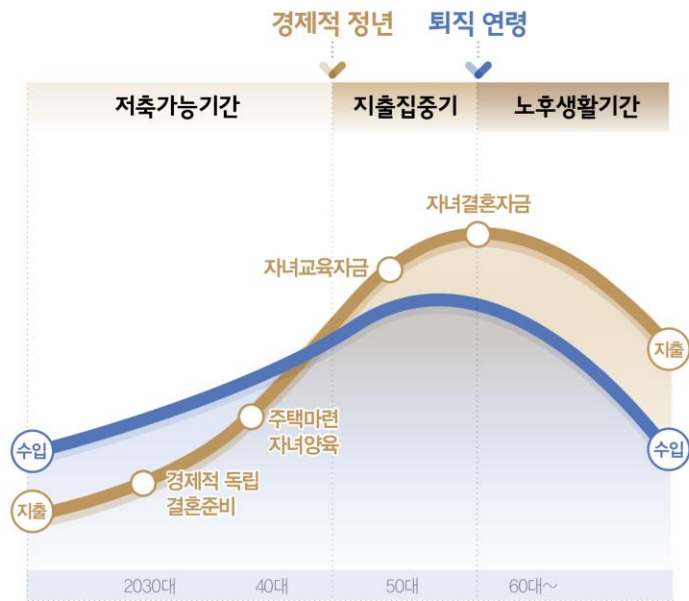
가 입 자 교 육 안 내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부담금 납입현황,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 실시)

※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께서는 본 교육자료를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하여 가입자들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워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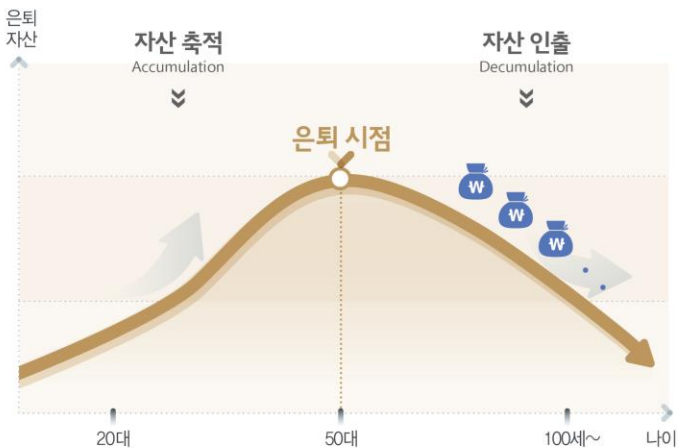
- 우리는 결혼준비, 주택구입, 자녀교육, 자녀결혼, 노후준비 등 수많은 재무목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라이프 이슈에 맞춰 재무목표를 세우고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고려하여 자산 및 부채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자산관리를 시작해보세요!

02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후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인생의 수많은 재무목표 가운데 노후준비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100세 시대에는 나의 수명이 자산의 수명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축적한 자산으로 은퇴 이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노후준비의 핵심입니다.



03 든든한 현금흐름을 만들어보세요

- 노후에 든든한 현금흐름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3층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04 나의 노후준비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체크포인트 1.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일까?

최소 월 생활비	부부 기준 198.7만원	개인 기준 124.3만원
적정 월 생활비	부부 기준 277.0만원	개인 기준 177.3만원

*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9차, 202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체크포인트 2. 3층연금에서 나오는 예상 연금수령액은 얼마일까?

내 연금 조회하는 방법

-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연금정보 통합조회 신청 (최초 이용시 3영업일 소요)
- 본인이 가입한 국민, 퇴직, 개인연금 정보 및 예상연금액 확인

체크포인트 3. 노후 필요 생활비 vs 예상 연금수령액 비교해보기



부족한 노후자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활용해 채워주세요!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01 제도의 종류 및 특징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운용주체 : 회사

-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 직전 30일치 평균임금 × 근속년수
- DB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른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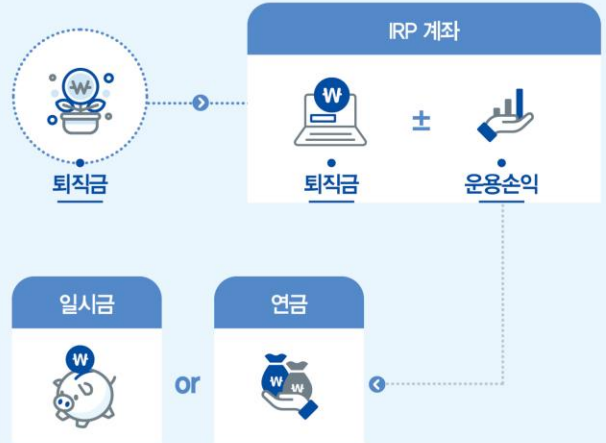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운용주체 : 근로자

- 회사가 매년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다가 퇴직 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본인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재직 중에 개인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관련 내용은 7P 참조

Q01 과거의 퇴직금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평균임금** :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입금총액 판단기준 (예시)

퇴직급여 포함 항목	-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는 경우 -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인 경우
퇴직급여 불포함 항목	- 일시적·돌발적 사유로 지급된 것과 같이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 (해외파견수당 등) -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거나,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 (경조사비 등) - 현물, 실비반상으로 지급되는 것 (급식, 교통비 등)

한 눈에 보는 퇴직연금제도

구분	DB	DC/기업형 IRP	IRP
퇴직급여	평균임금 30일치 × 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퇴직급여 이전금액 ± 운용손익
운용주체	회사	근로자	가입자
추가납입	불가	가능	
중도인출	불가	가능(법정사유 충족 시)	
수급요건	퇴직 시 IRP 이전 후 수령		연금 •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연금 수령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 미충족시 •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기업형 IRP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DC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Q02 회사부담금 외에 DC가입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납입할 수 있을까?

본인이 희망 시 회사부담금 외에 추가로 연간 1,800만원 (연금저축, IRP 개인부담금 합산 기준)까지 개인자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관련 내용은 7P 참조

Q03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내야할까?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보관·운용하고 가입자의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 부담주체

제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DB	회사	회사
DC	회사 부담금	회사
	개인 부담금	가입자
IRP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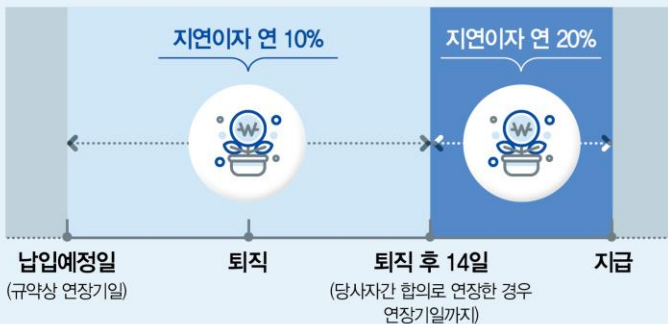
DC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

① DC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부담금 납입주기는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 등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운용손실 방지를 위해 **납입예정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연이자 적용률



※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한 경우
-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앞의 세가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표준형 DC제도** : 둘 이상의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안하는 하나의 표준규약을 활용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형태입니다. 표준규약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①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②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③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
- ④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⑤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 ①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②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③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02 퇴직급여 지급 및 IRP 이전 효과

퇴직급여 지급절차



Q04 DC가입자가 퇴직 시 현재 운용 중인 상품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할 수 있을까?

DC가입자가 현재 운용 중인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길 원하는 경우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로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직접청구

- ▶ 퇴직연금가입자는 회사의 도산, 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안내 및 청구 상담 : 삼성생명 퇴직연금 콜센터(1588-3115)
- ▶ 퇴직연금사업자가 회사의 폐업 등 도산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별 가입자에게 서면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합니다.

IRP 의무 이전

- ▶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급여계좌 등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2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3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의 경우
- 4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
-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6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IRP 이전 효과

1 과세이연 효과

이연 세액만큼 투자원금이 늘어나요!

- ▶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급여는 인출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이연되어 발생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퇴직급여 수령 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전 퇴직급여 전액(퇴직소득세 포함)과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을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절세 효과

연금 수령 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 과세가 미루어진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3.3 ~ 5.5%)가 부과됩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세제혜택 관련 자세한 내용은 7P 참조

3 자산관리 효과

노후자금을 더욱 든든히 준비할 수 있어요!

- ▶ IRP계좌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03 퇴직연금과 세금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문에서 언급한 세율은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

- ▶ IRP 계좌에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연금저축, DC/IRP 개인 추가납입금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 가능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 ▶ IRP 계좌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는 소득의 원천과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 × 70% •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 60%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3.3 ~ 5.5%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개인납입금 (세액공제 O)		
개인납입금 (세액공제 X)	과세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해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의 60~70%가 부과되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

만 55세 ~ 69세	만 70세 ~ 79세	만 80세 이상
5.5%*	4.4%	3.3%

* 종신연금 수령시 70세 미만인 경우에도 4.4%

연금수령요건

- ▶ 만 55세 이상
-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퇴직소득이 포함된 경우 제외)
-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합니다.
(단, 2013년 3월 이전 퇴직연금 가입자는 수령연차를 6년부터 시작)

Q07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예상 연금액(월)은 얼마나 될까?

퇴직금 재원	확정연금형 (10년)	확정연금형 (20년)	종신연금형 (30년 보충)
5천만원	48만원	28만원	18만원
1억원	96만원	55만원	36만원

- * 위 연금액은 공시이율 3.11%(2023.1월 기준) 지속 가정 시 계산된 세전금액으로 향후 실제 수령할 연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 종신연금은 제 9회 경합생명표를 반영하여 남성기준 55세부터 연금수령 가정하였습니다.
- * 세전 예상 수령액으로 실제 세금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금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05 ISA 만기자금 이체 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금액은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DC/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Q06 IRP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IRP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04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 ❶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도 유형에 따라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도

제도	중도인출	담보대출
DB	불가능	적립금의 50%
DC/IRP	적립금의 100%	적립금의 50%

* 중도인출 : DB형 중도인출 불가

* 담보대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 전에는 담보권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적 한계 등의 사유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사유

	중도인출	담보대출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가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 1회 한정)	✓	✓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개인형IRP 가입자의 경우 요양비용 요건 미적용)	✓	✓
4.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및 요건 부합 시)	✓	✓
6.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
7. 사업주의 휴업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및 요건 부합 시)	✗	✓
8.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신청 및 지급절차 * DC/IRP형만 신청가능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홈페이지 App, 모바일, PC 메뉴

MY삼성생명 > 퇴직연금 > 퇴직연금 관리 > 중도인출 신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5 퇴직연금 계약이전

- ❶ DB, DC제도에서는 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자로 퇴직연금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 변경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변경 -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수리
2	계약이전 신청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계약체결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가입자정보 이전 -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
4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 새로운 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운영

06 퇴직연금제도 폐지 및 중단

폐지되는 경우

노사합의 또는 폐업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IRP계좌로 이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중단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개인부담금 납입,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DC/IRP 가입자를 위한 교육내용입니다.)

01 안정적인 투자원칙

- 1 분산 투자**
 투자위험과 기대수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2 장기 투자**
 투자가 시간이 길수록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이 낮아지고 장기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3 적립식 투자**
 투자시점에 간격을 두고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2 적립금 운용을 위한 투자상품

- ▶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퇴직연금 투자상품에는 크게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수익 구조	원금과 이자가 확정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
투자 위험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주요 상품	보험사 : 이율보증형, 금리연동형 은행/저축은행 : 정기예금 증권사 : 원리금보장형 ELB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
보수/수수료	없음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선취/후취 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 주식혼합형 및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총 적립금의 70% 이내에서 투자 가능

* 중도해지 시 상품별 투자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

Q01 TDF에 투자할 수 있나요?

TDF(Target Date Fund)란, 예상 은퇴시점을 설정하여 생애주기별 주식과 채권의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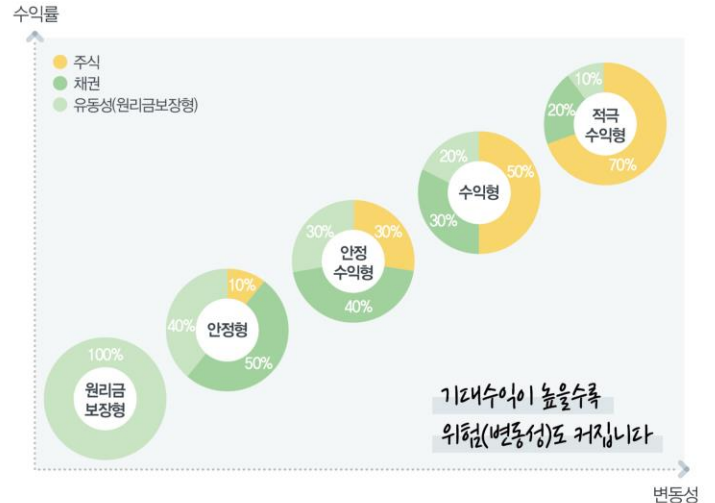
투자적격 TDF의 경우 총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적격 TDF : 주식비중이 80% 이하이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주식비중이 40% 이하인 펀드

03 투자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 ▶ DC/IRP 가입자는 본인이 추구하는 기대수익에 대하여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자산의 투자비중을 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1 투자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예시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월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발송해드리는 **삼성생명 퇴직연금 투자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적립금 운용현황 확인방법

- ▶ DC/IRP 가입자는 자신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운용지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 ▶ 삼성생명 홈페이지(App, 모바일, PC)를 통해 **적립금 운용현황 조회 및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내용은 12P 참조

1 투자유의사항

원리금보장형

- * 확정급여형(DB)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실적배당형

-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이자 수익의 지급시기 및 환매 제한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가입자는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5 디폴트옵션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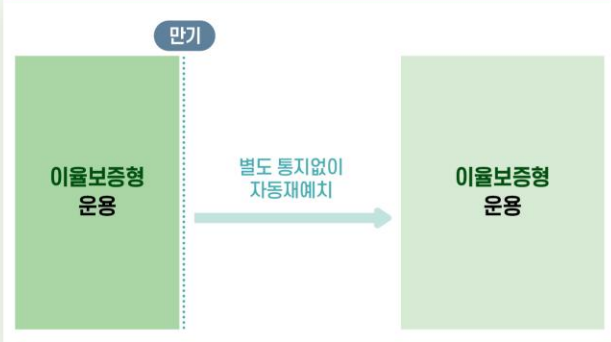
- DC와 RP 가입자가 신규 가입 또는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22.7.12일부터 시행)

도입 후 달라지는 점?

-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때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
- 통지 이후에도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

* 신규 가입 후 운용지시 없는 경우 4주간의 유예없이 통지 후, 2주 이내 운용지시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 적용

도입 전 (자동재예치 ◯)



도입 후 (자동재예치 ✖)



※ 운용지시가 없는 6주간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
(보험상품 : 금리연동형, 신탁상품 : 고유대)

※ 상품변경 운용지시나 사전 지정이 없을 경우 6주 후에도 대기성 자금으로 운영

•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선택 (Opt-In) 할 수 있고,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

1. 우리회사 퇴직연금제도 기본정보

회사명	계약유형	계약일
엠티에스코리아(주)	확정급여형(DB)	2010-12-31

2.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우리회사 DB 가입자의 예상 퇴직금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의 퇴직급여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준일자 : 2024-03-31]

평균근속기간	평균임금	표준급여액
10.91년	7,759,806원	84,677,554원

- 평균근속기간 : 산출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장(또는 회사) 전체 가입자의 평균근속기간의 합을 전체 가입자 수로 나눈 값
- 평균임금 : 산출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장(또는 회사) 전체 가입자의 평균임금의 총합을 전체 가입자 수로 나눈 금액
- 가입자의 평균임금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표준급여액 : 평균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3. 부담금 납입현황

-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가 최근 3년간 납입한 부담금 내역입니다.

납입연차	납입기간	부담금 납입액
1년차	2020년	628,050,025원
2년차	2021년	120,433,738원
3년차	2022년	770,644,232원

- 납입연차 : 부담금 납입상황을 연단위로 구분하여 표시
- 납입기간 : 기준일 현재 직전 3년 중에서 당해 납입연차(1년차, 2년차, 3년차)에 해당하는 기간을 표시 (단, 도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표시)
- 부담금 납입액 : 장래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납입된 총액

4. 퇴직연금자산 적립현황 [재정검증 결과]

[기준일자 : 2022-12-31]

기준책임준비금	계속	5,591,193,865원
	비계속	5,320,312,172원
최소적립금		5,591,193,865원
적립금액		5,618,870,668원
적립비율		100.5%

- 기준일자 : 사업연도 종료일
- 기준책임준비금 : 사용자가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 최소적립금 : ① 2019 ~ 2021년 : 기준책임준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② 2022년 이후 : 기준책임준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적립금액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금액이며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적립비율 :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에 대한 적립금액의 비율

※ 재정검증이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 적립금이 법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 말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재정검증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 사용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시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정안정화계획서에는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이 가능합니다.

5. 적립금 운용현황

[기준일자 : 2024-03-31]

상품유형	적립금액
원리금보장형	5,827,181,029원
실적배당형	0원

- 상품유형 :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상품
- 적립금액 :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이 적립된 자금으로 수수료, 운용수익 등이 반영된 금액

[적립금 운용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안내]

DB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삼성생명